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5호, 2006. 5. 19. 공포, 2006. 8. 2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당연직 이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북아역사재단의 당연직 이사(영 제2조)

동북아역사재단의 임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국정홍보처 차장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규정함.

나. 정부의 출연금 등의 교부(영 제3조 및 제4조)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사용 등에 필요한 예산 관련 서류 및 집행결과 보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6년 8 월17일

국 무 총 리 한 명 숙

**국 무 위 원 이 상 수
노동부장관**

●대통령령 제1964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한방병원·한의원 및 요양병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의2제2항중 “원단위”를 “10원 단위”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12월”을 “12월 이내”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공단이”를 “노동부령으로”로 한다.

①공단은 법 제79조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급여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를 시작한 날부

터 6월내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일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로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장에 복귀한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다만,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에 장해급여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장해급여자를 제외한다.

2. 장해급여자로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장에 복귀한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3월 이내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직무수행 또는 다른 직무로의 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 2.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인 장애급여자의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3.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장애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 4.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인 장애급여자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응용훈련 또는 재활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제10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및 위원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수당을 지급한다.”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부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제105조제1항중 “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을 “부위원장, 상임위원(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말한다) 및 위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01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전단 및 제5항은 소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제11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2호 주1)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제1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선원법”을 “「선원법」”으로,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기공사사업법”을 “「전기공사사업법」”으로, “정보통신공사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사업법」”으로, “소방시설공

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3호다목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며, 제13조의2 전단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6조제1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8조의2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고, 제83조제1항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88조제2항 전단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하며, 제90조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제91조 단서중 “국고금관리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2항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이 종결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③(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은 제26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요양종결일부 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던 사업주 또는 이미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 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던 사업주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이유

요양이 종결된 후 장애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장복귀 이후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도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 변경(영 제26조의2제3항)

- (1) 「최저임금법」이 개정(2005. 5. 31)되어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시기가 종전의 당해 연도 9월 1일에서 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으로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2)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시기에 맞추어 당

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인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 (3)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결정의 정확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충당범위 확대(영 제4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 (1)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액 중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부당이득금에 일시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충당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2)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3)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의 개선(영 제82조의2제1항)

- (1)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고용유지가 미흡함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장해급여자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 사업주가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던 직장복귀지원금을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의 요양종결일부터 3월 이내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전환을 위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력의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그 장해급여자를 6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에도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3)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이 종결된 장해급여자의 직장복귀를 촉진시키고, 복귀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의 개선(영 제101조 및 제105조)

- (1) 보험급여와 관련된 재심사청구사건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

구하고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 1인이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2) 보험급여와 관련된 재심사청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도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업무분담을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재결에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